



소셜미디어 데이터 활용과 보험료 산출

손민숙 연구원

연구

미국에서 보험료의 산출은 신용 점수나 파산, 범죄 기록, 세무 서류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며, SNS 정보 또는 인터넷 활동 내역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음. 최근 뉴욕 금융당국은 생명보험료 산정 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정보 및 비전통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활용에는 불법적 차별 및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뉴욕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뉴욕 금융당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에서 보험료의 산출은 신용 점수나 파산, 범죄 기록, 세무 서류 등의 공공정보를 활용하며, SNS 정보 또는 인터넷 활동 내역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음
 - 현재 보험에서는 주택소유 기록, 신용점수, 파산 기록, 범죄 기록, 세무서류 또는 면허증 등과 같은 공공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함¹⁾
 - LexisNexis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뉴욕 보험회사가 공공정보를 활용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 중임
 - 뉴욕의 160개 보험회사 중 한 곳만이 SNS, 물건 구매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을 언더라이팅²⁾에 활용함
- 최근 뉴욕 금융당국은 생명보험료 산정 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정보 및 비전통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³⁾
 - 뉴욕 감독 당국은 18개월간 160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SNS 정보 등 비전통적인 정보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1) WSJ(2019. 1. 30), “New York Insurers Can Evaluate Your Social Media Use - If They Can Prove Why It’s Needed”
 2) 보험료 산출을 포함하지 않은 보험 인수 결정을 의미함
 3)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2019. 1. 18), “Use of External Consumer Data and Information Sources in Underwriting for Life Insurance”

- 뉴욕은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생명보험회사 지침을 정한 최초의 주이며, 향후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활용에는 불법적 차별 및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며, 뉴욕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보험 인수 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지위 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임⁴⁾
 - 보험계약상의 제한이나 보험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리한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⁵⁾
 - 언더라이팅 및 보험계약 인수 시 프로세스에 불법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투명성에 결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역할이지만, 간단하지 않음
 -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보험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⁶⁾
 - Carpe Data⁷⁾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등을 조사하여 보험계약자가 신청서에 흡연 또는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냄
- 뉴욕 금융당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나, 소비자가 주목하는 점은 불법적인 차별이나 투명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임
 -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며, SNS상에서 공유하는 정보의 유형을 제약할 것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NS의 사용에 관한 온라인 행동 지침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기도 함⁸⁾
 -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된 사진 대신 운동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운동 상태 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구입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임
 - 사생활 침해 및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의한 공유 데이터의 신빙성 저하 등 관련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세부 내용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가 존재함⁹⁾ **kiri**

4) 뉴욕 보험법 Art. 26

5) 뉴욕 보험법 § 4224(a)(2)

6) The Verge(2019. 2. 7), "Why the future of life insurance may depend on your online presence"

7)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보험관련 인슈어테크 회사임

8) WSJ(2019. 1. 30), "New York Insurers Can Evaluate Your Social Media Use - If They Can Prove Why It's Needed"

9) The Verge(2019. 2. 7), "Why the future of life insurance may depend on your online presence"